

p. 40-1

기 존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대기시간은 포함, 휴게시간은 제외
	의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대기시간은 포함, 휴게시간은 제외

p. 40-2

기 존	법정 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당사자 합의)	
		통상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소자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일 7시간, 1주 40시간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	
	유해위험	1일 6시간, 1주 34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X	

수 정	법정 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당사자 합의)	
		통상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 한도
	연소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유해위험	1일 6시간, 1주 34시간	1일 6시간, 1주 34시간	X	

p. 42-1

기 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 조문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수 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법 조문	<p>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p>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 42-2

기 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9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수 정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9	<p>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p>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2018.9.1.시행)</p>